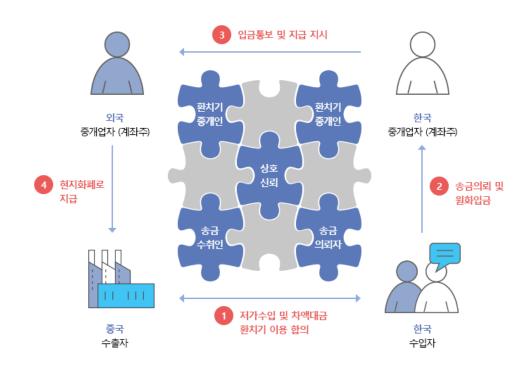
환치기 개념

-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유출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
 - 。 (예) 해외로 송금하려는 거주자가 국내 환치기업자(거주자)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, 국외 환치기업자(비거주자)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, 현지에서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(비거주자)에게 지급
 - 환치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지만(인도에서는 hawala, 파키스탄에서는 hundi 등으로 표기),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개념은 아님
- 환치기는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특성상 탈세 및 기타 불법자금거래에 이용될 소지가 큼
 - 외국환 은행을 통한 송금과 달리, 거래 증빙서류 제출 또는 관련 신고절차 생략에 따른 자금 원천 파악 불가
 - 。 국내에서 거주자간 원화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관세청·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거래내역이 통보되지 않아,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불가능하게 함

거래형태(예시)



한국 중개업자(환치기 중개인), 한국수입자(송금 의뢰자), 중국 수출자(송금 수취인), 외국 중개업자(환치기 중개인)

- 중국의 수출자가 한국의 수입자에게 저가수입 및 차액대금 환치기 이용합의
- 한국 중개업자(계좌주)가 한국의 수입자에게 송금의뢰 및 원화 입금

- 한국의 중개업자(계좌주)는 외국 중개업자(계좌주)에게 이금 통보 및 지급 지시
- 외국 중개업자(계좌부)는 중국 수출자에게 현지화폐로 지급

환치기 단속 및 처벌조항

- 환치기 계좌 운영 : 외국환거래법 제 8 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제 1 항, 제 27 조(벌칙)
 - 。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 영위
- 환치기계좌를 통한 지급·영수 : 외국환거래법 제 16 조(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) 제 3 호 · 제 4 호, 제 29 조(벌칙), 32 조(과태료)
 - 。 환치기계좌를 통한 해외 지급등은 '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'에 해당